

Deloitte.

세무관세뉴스

2023년 5월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주목할 만한 내용:

법인소득세 ("CIT")

- 관세 신고 없이 국내 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
-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비용
- 전자 거래서류

노동

- 최저임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월간 VND 1,800,000로 인상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베트남 원산지 물품 매매에 대한 FCWT
- FCWT 확정신고

간접세 ("VAT")

- 고위험 신청서류의 경우에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환급

개인소득세 ("PIT")

- PIT 원천징수해야 하는 직원 선물의 종류

무역 및 관세

- 국내 기업이 수출가공기업 ("EPE")에 판매한 수입 물품은 수입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시행규칙 초안 완성
- 2023년 5월 1일부터 중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에 따른 신규 C/O Form 적용
- 해외에서 가공 위탁된 제품 및 반제품은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환급되지 않음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지침문서

관세 신고 없이 국내 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

수출가공업체 ("EPE")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국내기업이 부가가치세율 ("VAT") 8% 또는 10%의 인보이스를 발행한 경우::

- 2018년 4월 20일 제39/2018/TT-BTC호 시행규칙, 제 50.1조에 규정된 관세 절차를 적용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해당 비용은 규정에 따라 인보이스 및 지급 관련 증빙서류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갖추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 불산입 비용으로 처리된다.
- 관세 절차가 강제적이지 않은 경우: 공문에는 관세신고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신에, 손금산입에 대한 일반 조건을 다시 명시한다.

(세무총국 ("GDT") 의 2023년 4월 21일 제 1454/TCT-CS 호 OL)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비용

회사가 노동법 및 시행 지침서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비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CIT") 목적상 공제 가능 비용으로 처리된다.

- 손금산입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한다; 및
- CIT 규정에 따른 손금 불산입 비용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제 96/2015/TT-BTC호 시행규칙 및 제 25/2018/TT-BTC호 시행규칙)

(Bac Ninh 세무국의 2023년 4월 19일 제 1292/CTBNI-TTHT 호 OL)

전자 거래서류

현행 조세관리법은 회사의 구매 또는 판매거래에 대한 전자형식으로 계약체결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전자계약은 제51/2005/QH11호 전자거래법에 따라 진행된다.

조세행정절차는 납세자에게 경제계약이나 기타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계약은 제19/2021/TT-BTC호 시행규칙, 제6.3조의 지침에 따라 종이로 전환될 수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4월 27일 제 7829/CTBDU-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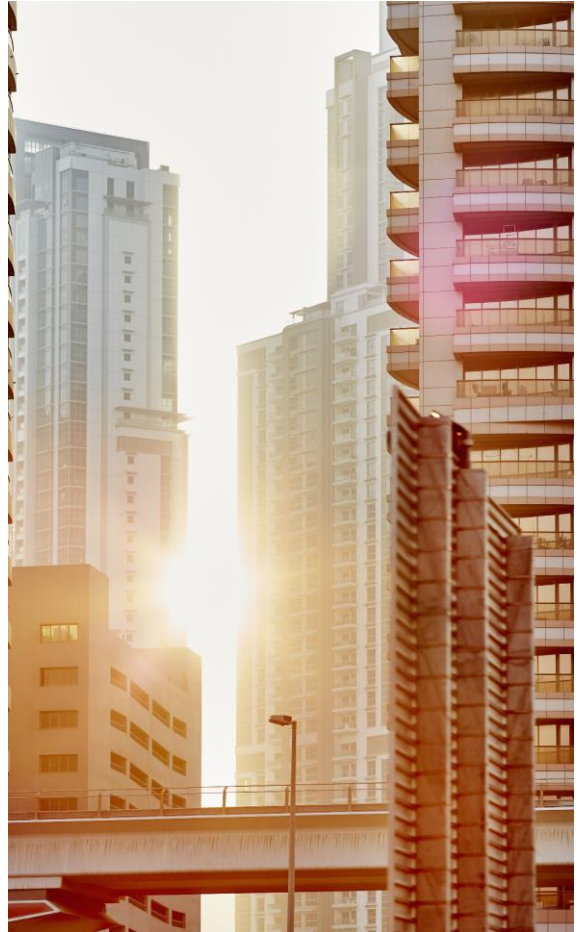
간접세 지침문서

고위험 신청서류의 경우에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환급

세무당국은 제 8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33,34,35조에 따라 납세자에 의해 제출된 세금환급 신청서류를 수령, 분류 및 처리할 책임이 있다.

세금환급 신청서류의 처리과정에서 고위험 수준으로 분류되는 신청서류의 경우에 VAT 환급전 심사가 진행하게 된다.

(세무총국의 2023년 4월 25일 제 1492/TCT-KK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노동 신규 규정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최저임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월간 VND 1,800,000로 인상

이 시행령은 최저임금을 2023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월간 VND 1,800,000로 인상하며, 이는 다음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 I. 공무원, 국가기관의 계약직원의 급여, 수당 수준 및 기타 제도
- II. 법규정에 따른 운영비, 생활비
- III. 법정 급여율에 따른 기여금 및 혜택

(정부의 2023년 5월 14일 공무원, 군인의 최저임금에 관한 제 24/2023/ND-CP 호 시행령)

PIT 원천징수해야 하는 직원 선물의 종류

회사가 근로계약 종료 후 직원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해당 선물이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2조, 10항에 규정된 선물형식 (증권, 출자금, 부동산, 소유권 등기 대상 재산을 포함함)에 해당하지 않으면 PIT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해당선물의 1천만 VND를 초과하는 가치분에 PIT 10% 원천징수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5월 15일 제33037/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베트남 원산지 물품 매매에 대한 FCWT

베트남 회사가 외국 회사에 물품을 판매하고 지정된 해외 제3자에 물품을 배송할 때 제103/2014/TT-BTC 호 시행규칙 제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FCWT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노이세무국의 2023년 4월 20일
제24873/CTHN-TTHT호 OL)

FCWT 확정신고

외국인 계약자와 물품/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베트남 회사가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FCWT 확정신고: 회사가 계약 종료 시 각 계약에 대한 FCWT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다.
- FCWT 확정 신고서상 계약종료 시점 및 과세기간 종료시점 결정 (2021년 9월 29일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Form 02/NTNN): 회사는 계약서상 적용 법규정에 관한 조항 (베트남법, 외국법, 국제조약, 상사 관행)을 기반으로 계약종료 시점을 결정한다. 계약종료 시점은 FCWT 확정신고서상 과세기간 종료시점이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3년 5월 4일
제2225/CTHPH-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주목할만한 뉴스

국내 기업이 수출가공기업 (“EPE”)에 판매한 수입 물품은 수입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국내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님)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EPE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신고서상 모드 A11를 적용하며 수입 관세 및 VAT를 납부해야 한다.

물품이 EPE로 수출되어 EPE 내에서만 소비된 후 국내 기업의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수출 물품이 미사용/ 미가공 상태이라야 한다
- 물품 재수출 절차는 초기 수입업체 또는 초기 수입업체에 의해 위탁된 단체가 수행된다. 수출 신고서상 모드 B13가 적용된다.

(관세총국의 2023년 4월 12일
제1684/TCHQ-TXNK호 OL)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시행규칙 초안 완성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시행규칙 초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원산지 사전 심사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 수출신고 시 원산지 신고, 원산지 증명서 제출, 수출 물품 원산지 검사 및 확인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 수입신고서상 원산지신고정보,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시점, 원산지증명서 거부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토, 확인 및 특별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관세 신고서간 상품코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등에 대한 세부규정

이 시행규칙 초안은 제 38/2018/TT-BTC호 시행규칙 및 관련 수정 보완 시행규칙을 대체할 예정이며 무역원활화 규정을 통해 기업계의 수출입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는 이 시행규칙 초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2023년 2분기 내에 공표할 예정이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2023년 5월 1일부터 중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에 따른 신규 C/O Form 적용

2023년 5월 1일부터 중국의 RCEP에 따른 신규 C/O Form이 적용된다.

C/O Form RCEP 발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명목록은 중국에 의해 이미 C/O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의 포털에 공시되었기 때문에 해당 목록은 ASEAN 사무국 웹 사이트에 게시되지 않다.

(관세총국의 2023년 5월 5일 제2114/TCHQ-TXNK호 OL)

해외에서 가공위탁된 제철 및 반제품은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환급되지 않음

관세총국에 따르면 수출 제조용 수입 원자재 및 수입 원자재로 제조한 후 가공위탁을 위해 해외로 배송된 반제품은 수출 관세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가공 후 재수입되는 제품은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과세 가격은 이전에 수출된 가공용 원자재, 소모품 및 부품의 가치를 공제한 후 남은 제품 가치이다.

수입 가공품은 해외로 수출을 위해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되는 경우 수입관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다.

(관세총국의 2023년 5월 4일 제2093/TCHQ-TXNK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